

第八章 部會 및 委員會

第26條 本會에 다음의 部會를 둔다.

1. 公共圖書館部會
3. 大學圖書館部會
3. 學校圖書館部會
4. 特殊圖書館部會
5. 其他 必要한 部會

第27條 本會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必要한 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九章 地區協議會

第28條 本會에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및 各道別 地區協議會를 둘 수 있다.

第29條 地區協議會에 事業補助金을支給할 수 있다.

但, 補助金을 받고자 하는 地區事業은 本會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十章 解散 其他

第30條 本會를 解散코자 할 때는 總會의 議決과 文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1條 本會를 解散할 때의 殘餘財産은 總會의 議決에 의하여 本會와 類似한 目的을 가진 公益團體에 寄附한다.

第32條 本定款은 總會의 議決이 아니면 變更할 수 없다.

第33條 本定款의 施行上 必要한 規定 및 細則은 別途로 理事會에서 定할 수 있다.

附 則

本定款은 文教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로 부터 施行한다.

韓國圖書館協會 表彰規程

第1條 (目的) 本規程은 韓國圖書館事業發展에 功績이 顯著한 個人 또는 團體를 表彰하여 그 功勞를 讚揚하고 아울러 今後의 圖書館事業發展에 대한 意慾을 鼓吹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表彰의 種類) 表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功績賞
2. 研究賞
3. 勤績賞

第3條 (功績賞) 功績賞은 韓國圖書館事業發展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個人 또는 團體를 表彰한다.

第4條 (研究賞) 研究賞은 韓國圖書館事業發展에 顯著하게 寄與할 수 있는 研究業績을 낸 個人 또는 團體를 表彰한다.

第5條 (勤績賞) 勤績賞은 20年 以上 圖書館事業에 從事하여 韓國圖書館發展에 寄與한 個人에게 每 5年마다 表彰한다.

第6條 (受賞者의 選定)

1. 各地區協議會會長 및 各部會長은 每年 9月末日까지 다음 書類를 具備하여 理事會에 推薦한다.
履歷書 1通
學歷 및 經歷證明書 1通
地區協議會會長 및 各部會長의 推薦書 1通
但, 地區協議會가 結成되지 않은 地區는 專門委員會委員長이 推薦한다.
2. 理事會는 要請된 推薦書를 表彰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決定한다.

第7條 (表彰審査委員會)

1. 本規程에 의한 施賞業務를 公正히 遂行하기 위하여 表彰審査委員會를 둔다.
2. 表彰審査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委員長 1人
委員 10人以內
3. 委員長은 專務理事가 된다.
4. 委員은 專門委員會委員長, 事務局長, 各部會長 (公共, 大學, 學校, 特殊圖書館部會에 限함), 大學의 圖書館學科長中 2人 및 常務理事中 1人을 委員長이 推薦하여 會長이 委囑한다.
5. 表彰審査委員會는 功績調査를 作成하여 審査結果를 理事會에 報告한다.

第8條 (施賞方法과 副賞)

1. 賞狀과 賞金 또는 賞品을 授與한다.
2. 賞金 또는 賞品の 金額은 豫算範圍內에서 따로 定한다.

第9條 (表彰의 時期) 表彰은 總會에서 行함을 原則으로 하되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隨時 이를 行한다.

第10條 本規程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事務局 內規로서 따로 定한다.

附 則

本規程은 1968年 6月 21일부터 施行한다.